

교원인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서울신학대학교 정관 및 동 시행세칙에 따라 교원의 인사 행정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원의 종류) ① 교원은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으로 구분한다.

② 전임교원은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구분한다.

③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교육전담교원과 강의전담교원, 연구(실습)를 전담하는 교원, 원어민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로 구분한다. <개정 2011.1.28., 2016.10.20., 2017.9.25.>

④ 비전임교원은 겸임교수, 시간강사, 석좌교수, 기금교수, 외래교수, 초빙교수, 명예교수 등으로 대학의 필요에 따라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8., 2017.9.25.>

⑤ 대학은 전임교원 중 부설기관 전담교수를 둘 수 있으며 전담교수의 부설기관 강의는 기본시수로 인정한다. <신설 2012.2.2.>

⑥ 명예교수는 전임교원으로 20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로 재직 중 학문 또는 본교 발전에 공헌한 자이어야 한다.

제3조(규정적용의 범위) ① 이 규정 제3조 이하는 전임교원에만 적용한다.

② 비전임교원의 자격, 임용절차, 복무, 처우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조(직급) ① 교원의 직급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한다. <개정 2011.1.28., 2012.8.31.>

② 교수의 직급정원은 전임교원 현원의 40% 이내로 한다.(승진신청학기 대학정보공시 기준) <신설 2012.2.2., 개정 2012.8.31.>

제5조(겸직금지) 교원은 다른 기관의 전임의 직을 겸할 수 없다. 단, 시간으로 타 임무를 맡을 때에는 소속 학과장을 통하여 총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단, 석좌교수와 기금교수는 예외로 한다.

제6조(복무연한) 교원은 계약에 의하여 복무하되 정년은 만 6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최종일로 한다.

제7조(명예교수) 서울신학대학교에 교수로 봉직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총장이 명예교수심의위원회를 거쳐 총장이 이사장에게 추대를 제청한다.

① 본 대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당시 총장 또는 교수로 있던 자 <개정 2012.8.31., 2017.9.25.>

② 재직 중 교육상, 학술상의 업적이 현저하여 학교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개정 2017.9.25.>

③ 명예교수 추대를 위하여 피 추천인의 신청서 및 이력서, 교육상 및 학술상의 공적 개요서, 명예교수 추천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5.>

제8조(명예교수의 대우) 명예교수에 대한 대우는 아래와 같다.

- ① 총장은 필요에 따라 명예교수에게 강의를 위촉할 수 있으며 강사료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② 명예교수는 본 대학교의 제반의식에 있어서 본 대학교수와 동등한 예우를 받는다.

제9조(교원의 포상) 총장은 대학발전에 현저한 공로나 업적이 있는 교원에 대하여 교직원 포상시행세칙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장 인사위원회

제10조(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대학의 인사위원회는 부총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외에 총장이 임명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4인, 도합 7인으로 조직한다. <개정 2017.9.25.>

- ② 인사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총장이 교원을 임면 제청하고자 할 때의 그 임면 제청에 관한 사항.
 2. 계약제 임용의 세부적인 기준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7.9.25.>
 4.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5.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기타 총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인사위원회가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전임용 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2. 학생의 교수와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3장 신규임용

제12조(임용방법) ① 신규임용 방법은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으로 한다.

- ② 총장은 전임교원(조교 제외) 지원자의 학력, 경력, 연구실적을 심사하여 신입교수 임용심사기준에 적합한 자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에게 제청한다.

1. 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가. 일반계열의 경우 학문성이 인정되는 해당 전공분야 정규박사학위취득자 및 동등한 학력이 있는 자. <개정 2017.9.25.>

나. 예능계의 경우 박사와 석사 및 그에 준하는 해당 전공분야에서 최소한 4년 이상 수학한 자(학부전공은 2년으로 인정한다). 단, 실용음악전공의 경

우에는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하여 탁월한 업적을 이룬 자도 인정한다. <개정 2017.9.25.>

2. 신학전공의 전임교원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목사로서(정년트랙은 단독 목회 2년 이상) 소속한 지교회 담임목사 및 총회장의 추천을 받아야한다. <개정 2017.4.28.>
 3. 신학전공이외의 전임교원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에 소속된 세례교인이거나 본교단신학의 기본입장에 동조하는 세례교인으로 본교단의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자로 임용 후 본 교단으로 전입 가능한 자. <개정 2017.4.28.>
 4. 본 대학교의 건학 및 교육이념, 신앙선언문, 사명선언문, 그리고 공동체 생활헌장에 동의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열의가 있는 자 <개정 2017.4.28.>
 5. 복음주의적 기독교대학의 교수로서 신앙과 학문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자. <개정 2017.4.28.>
- ③ 신규임용의 심사위원 구성은 기초심사(전공분야일치)와 전공심사(학문적 우수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 중 3분의1이상은 타대학교 교원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 ④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 지원자 중 심사결과 공개를 요구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개할 수 있다.
 - ⑤ 신규채용자의 제출서류와 인터넷 및 온라인등으로 본인이 기재한 내용이 임용과정이나 임용후라도 허위사실로 발견될 경우와 재직 중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기본교리 및 본 대학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신앙선언문, 사명선언문등에 근거하여 위배되는 행동을 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7.9.25.>

제13조(특별채용) 특별채용의 자격과 절차는 교원 특별채용의 임용제청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임용자의 구분) 신규임용은 신진교수와 경력교수로 구분하되 임용직급은 교육 및 연구경력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15조(임용계약) 임용계약서 상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명시한다.

- ① 정년트랙 전임교원
 1. 근무기간 <개정 2012.8.31.>
 - 가. 교수: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교수로 최초 임용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
 - 나. 부교수, 조교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 급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3.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4. 그 외 필요한 사항은 부가적으로 정한다(단, 제1호~제3호 외의 계약조건은 본인의 동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②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1.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조교수로 임용한다.<개정 2010.12.17., 2012.8.31.>
 2. 임용절차, 근무조건, 업적평가 및 급여 등 그 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임용지침에 따른다.

제4장 승진

제16조(승진최저 근무년수) 전임교원이 승진함에는 현 직급에서 최소한 다음과 같은 근무년수를 필요로 한다(연구년 포함, 일반휴직, 직위해제기간 제외). <개정 2011.1.28.>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 6년 <개정 2012.8.31.>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 5년

제17조(승진요건 및 심사절차) ①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승진은 제16조의 최저근무년수를 경과한 자라야 한다.

② 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는 교수업적평가규정의 결과를 활용한다.

③ 승진은 전항의 심사결과와 근태 및 품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총장이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에 제청한다.

제18조(승진신청) ① 학교는 최저 승진 근무연수를 충족한 교원에게 승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문서로 4개월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승진을 신청하는 경우 그는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학교가 정하는 승진신청서를 작성하여 승진에 필요한 소정양식을 첨부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5.>

③ 정한 기한내에 승진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승진 심사를 할 의사가 없음으로 간주하여 승진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19조(승진시기) 교원의 승진 임용일은 4월 1일과 10월 1일자로 한다.

제20조(승진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할 수 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중(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정직 : 18월

나. 감봉 : 12월

다. 근신 또는 견책 : 6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이나 기타의 사유로 승진을 제한받는 경우의 그 승진 제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 제한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기본교리 및 본 대학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신앙선언문, 사명선언문등에 근거하여 위배되는 행위를 한 교원에 대하여는 승진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7.9.25.>

제5장 재임용 및 재계약

제21조 삭제 <2012. 8. 31.>

제22조(절차) ① 총장은 계약에 의해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해당 교원

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학교의 소정양식에 따른 재임용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재임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재임용 대상교원이 위 기간내에 재임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재임용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9.25.>
- ③ 총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재임용을 신청한 교원에 대해 교수업적평가의 결과와 근태 및 품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총장이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에 제청한다.
- ④ 임용권자는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여,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해당 교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해당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
- ⑤ 교원인사위원회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교원재임용 지침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9.25.>
 - 1. 교육에 관한 사항
 - 2. 연구에 관한 사항
 - 3. 봉사에 관한 사항
 - 4. 근태에 관한 사항
 - 가. 교수로서의 기본 자질
 - 나. 대학에 대한 기여도 <개정 2017.4.28.>
 - 다. 신앙생활 및 교회와 사회에 대한 기여도 <개정 2017.4.28.>
- ⑥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⑦ 재임용은 매년 3월 1일 또는 9월1일자로 한다.
- ⑧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기본교리 및 본 대학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신앙선언문, 사명선언문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교원에 대하여는 재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7. 9. 25.>

제6장 휴직

제23조(휴직의 사유)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

-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휴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7.4.28.>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에 임시로 고용될 때 <개정 2017.4.28.>
 7. 자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개정 2017.4.28.>
 - 7의2. 만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개정 2017.4.28.>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개정 2017.4.28.>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삭제 <2017.9.25.>
- ② 임용권자는 제1항 제7호 및 제7호의2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신설 2017.4.28.>

제24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23조 제1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제23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23조 제5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2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23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여교원의 경우에는 3년 이내로한다. <개정 2017.4.28.>
7. 제2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25조(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 ③ 제23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한다.

제26조(휴직 및 연구년의 처우) ① 휴직 및 연구년에 대한 처우는 보수규정에 따른다.

② 휴직기간이 만료되고도 복직하지 아니하는 자는 휴직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 질병에 의한 휴직은 예외로 한다.

제27조(연구년) ① 정년트랙 조교수 이상의 직급에서 근속한 교원은 3년에 6개월, 6년에 1년간 연구년을 허락한다. 다만, 본 대학교 최초임용자는 6년 경과 후 연구년을 허락한다. <개정 2012.8.31., 2017.9.25.>

② 연구년교수의 선정기준은 연구년 규정에 따른다.

제7장 징계

제28조(직위해제) ① 총장의 요청에 의거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약식명령이 청구된 교원은 제외함)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4.28.>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개정 2017.4.28., 2017.9.25.>
3.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개정 2017.9.25.>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신설 2017.4.28.>

② 제1항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로서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총장은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에 한하여 대기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그 기간중 능력회복을 위한 특별 교육훈련 또는 특별 연구과제를 주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제29조(면직) ① 전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소 사실이 인정되어 형이 확정된 자는 면직(파면 또는 해임) 시킨다.

② 전조 1항 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기 기간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파면 또는 해임) 시킬 수 있다.

제29조의2(의원면직의 제한) ①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②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교원이 제1항에 따른 의

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7.4.28.>

제30조(징계) 교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총장의 요청에 의거 이사장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또는 견책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본 대학교의 건학 및 교육이념, 신앙선언문, 사명선언문 등에 위배된 때 <개정 2017.9.25.>
2. 사립학교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8장 보 칙

제31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 정관, 제 규정, 교육법, 사립학교법 등을 준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②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개정과 폐지는 교원인사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경과조치) 현재 재직 중에 있는 교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의 기간 계산은 그 임용일자로부터 적용한다.
- ④ (폐지) 이 규정 시행이후에는 구 교직원 인사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는 이 법에 따른

조교수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 근무경력은 이 법에 따른 조교수 근무경력으로 본다.

- ③ (경과조치) 제16조와 관련하여 전임강사 근무경력은 2년에 한하여 조교수 경력을 인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